

# 원주태장5, 원주흥업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1. 6. 21.(월)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2021.06.2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6.2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공고하는 **원주시 다가구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원주태장5 영구임대, 원주흥업2 영구임대 모집**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복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회공고 영구임대주택 예비자로 선정되면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지위 삭제**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 원주태장5단지(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50(태장동 131))  
· 원주흥업2단지(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2(흥업리 1841))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일반 공급	주거 약자			
					기타 공용	주차장						
원주 태장5	23	148	23.48	14.7482	1.8527	-	40.0809	60	-	501~ 503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개별	'17년 10월
원주 흥업2	21	56	21.93	12.2875	1.4589	4.2324	39.9088	40	-	204		'16년 10월
	(주거약자)	20	21.93	12.2875	1.4589	4.2324	39.9088	-	10			
	26	90	26.73	14.9769	1.7783	5.158	48.6440	50	-			
(주거약자)	30	26.73	14.9769	1.7783	5.158	48.6440	-	10				

- ※ 원주태장5단지 및 원주흥업2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 원주태장5단지 영구임대(148호), 국민임대(366호)
  - 원주흥업2단지 영구임대(196호), 국민임대(794호)
- \* 원주흥업2단지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는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원주시내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원주태장5	23	2,048,000	409,000	1,639,000	40,760	12,597,000	2,519,000	10,078,000	83,140
원주흥업2	21	2,006,000	401,000	1,605,000	39,920	10,638,000	2,127,000	8,511,000	84,770
	26	2,445,000	489,000	1,956,000	48,680	12,967,000	2,593,000	10,374,000	103,340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6.2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p>
세대구성원	<p>&lt;세대구성원의 범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li> <li>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직계존비속</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li> </ul>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p> <p>*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p>
외국인 직계존·비속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p>
태아	<p>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p>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p>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120%, 2인 110%) : 타목(2순위 장애인)</li> <li>-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li> <li>-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li> </ul>			
	<p>2. 월평균 소득</p>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094,142)원이하	(2,692,468)원이하	(3,589,957)원이하
	2인가구	(2,737,521)원이하	(3,650,028)원이하	(5,018,789)원이하
	3인가구	(3,120,260)원이하	(4,368,364)원이하	(6,240,520)원이하
	4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5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6인가구	(3,696,824)원이하	(5,175,553)원이하	(7,393,647)원이하
	7인가구	(3,889,012)원이하	(5,444,616)원이하	(7,778,023)원이하
<p>*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p>				
자산	<p>1. 자산기준 적용 신분</p> <p>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p>			
	<p>2. 총자산 기준</p> <p>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p>			
	<p>3. 자동차 기준</p> <p>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p> <p>*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p>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가격을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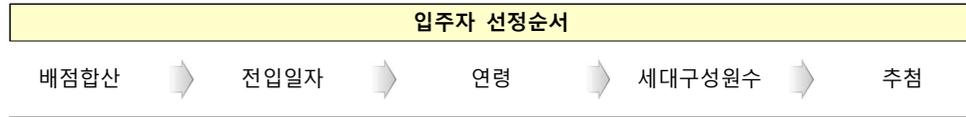
구분	순위	내용
일반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 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b>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b></p> <p>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b>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b></p> <p>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b>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b></p> <p>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b>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b></p> <p>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참전유공자</b></p> <p>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p> <p>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p> <p>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p> <p>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p>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p> <p>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p>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2순위	<p>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b>)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p>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b>)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p>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월주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2. 신청자 연령 (25점)	15년 이상	30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포함) (30점)	60세 이상	2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1~2인	24	
	3인	26	
	4인	28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6. 2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일반민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b>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b>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b>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b>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분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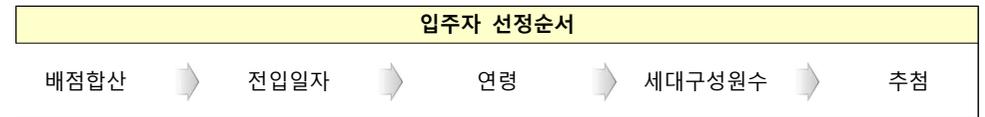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 점
총계		6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1
3. 원주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원주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원주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주거약자용	2021.07.12(월) ~ 2021.07.16(금) (09:00~18:00)	원주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검색완료 후 별도통보	LH원주권 주거복지지사 개별통보
일반공급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 6. 21. )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 됨	1통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별지 제6호 서식)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li> </ul>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li>·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1통
신청자격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li> </ul>	각1통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해당자만 제출 &gt;</li> <li>·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8. 계약안내

- 계약안내에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상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ul>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li>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b>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b>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li> </ul>
공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li> <li>•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ul>
입주대상자 결정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ul>

구분	유의사항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a href="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a>)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i> <li>•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원주휴업2단지 202동 옥상층에 설치함(관련 시설 없을 시 생략)</li> <li>•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li> </ul>

### 10.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원주태장5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주)국제산업 (주)동도건설		(주)선엔지니어링
원주휴업 A1BL		(주)효성 (주)진양		(주)동일건축 (주)태양유니스

**12.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우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병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絢情動障礙)로 가혹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심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p>있는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p> <p><b>13. 안면장애인</b></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p> <p>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p> <p>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p> <p><b>14. 장루·요루장애인</b></p> <p>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p> <p>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p> <p>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p>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p> <p>2) 방광루를 가진 사람</p> <p><b>15. 뇌전증장애인</b></p> <p>가. 성인 뇌전증</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p> <p>나. 소아청소년 뇌전증</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p> <p><b>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b></p> <p>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p> <p>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p> <p>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p>
--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중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 지방세정 자료	

	및 주택	<p>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li> <li>- 지방세정 시가표준액</li> <li>- 국토부 차적정보</li> </ul>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li> <li>- 직권조사 등록</li> </ul>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li> <li>- 지방세정 시가표준액</li> <li>- 국토부 차적정보</li> </ul>

15. 문의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시청 및 원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li> </ul>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1



원 주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을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차]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입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위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위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위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위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자료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액, 입주자력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입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차]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차]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제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제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제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b>원주시장 귀하</b>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철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추가/예비입주자용)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m <sup>2</sup>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input type="checkbox"/> 일본군위안부피해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만65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1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b>원주시장 귀하</b>						

[별지 제4-2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m <sup>2</sup>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일반 공급	주거약자용 <input type="checkbox"/> ( 순위) <input type="checkbox"/>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주택 및 자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세대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총자산가액 이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1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b>원주시장 귀하</b>							



